#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69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김재원·이해민·조 국

김준형 · 김선민 · 민병덕

서왕진 · 신장식 · 박홍배

황운하 · 차규근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, 한옥체험업자, 관광펜션업자,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.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.

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 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 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·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

항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(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(도시지역에서 「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,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업
- 마. 한옥체험업: 한옥(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)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 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, 전통 놀이

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제2장제3절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안전 및 위생교육)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제8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 관광	제3조(관광사업의 종류) ①
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관광객 이용시설업 : 다음	3
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라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:
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	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
	<u>따른 도시지역(「농어촌정</u>
	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지역
	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
	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	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
	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
	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
	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
	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
	고 숙식 등을 제공(도시지
	역에서 「도시재생 활성화
	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<신 설>

4. ~ 7. (생 략)

② (생략)

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 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 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 면서, 외국인 관광객의 이 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 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 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 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 함한다)하는 업

마. 한옥체험업: 한옥(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)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,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8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· 2. (생략)

<u><신</u> 설>

4. ~ 6. (생략)

③ (생 략)

제20조의3(안전 및 위생교육) 제4 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 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. 제8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(2) -----

---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및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자
- 4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